

17

##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(법 §58④)

### 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감면</li> <li>※ 재산세는 조례로 15%p 상향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대상 재설계 및 감면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취득세</th> <th>재산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수도권</td> <td>35%</td> <td>20%</td> </tr> <tr> <td>비수도권</td> <td>50%</td> <td>3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※ 재산세 조례로 15%p 상향 가능</li> <li>※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율 적용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	구분	취득세	재산세	수도권	35%	20%	비수도권	50%	35%
구분	취득세	재산세								
수도권	35%	20%								
비수도권	50%	35%								

### 2 개정내용

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유치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되,
  -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

#### <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매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재설계 >

< 개정 전 >	구분	< 개정 후 >	
취득세 50%	수도권	취득세 35%, 재산세 20%(조례 +15%p)	<u>축소</u>
재산세 35%(조례 +15%p)	비수도권	취득세 50%, 재산세 35%(조례 +15%p)	-

### 3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(2026. 1. 1.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①)